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21 선고 2022나370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21 선고 2022나37036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21 선고 2021가단12944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으로 담당변호사 강원표

변론종결 2023. 8. 24.

판결선고 2023. 9. 21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21. 선고 2021가단12944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2. 24. 체결된 매매계약을 36,162,4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6,162,4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,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가 선의라는 것으로,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신청한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, 그 주장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, 이 사건 소가 위법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홍순욱, 판사 이영훈, 판사 조미옥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[] [] 아파트 [] 동

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[]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2층 아파트

1층 257.18㎡, 2층 대지 12층 각 554.81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[] 대 18051.1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[] 철근콘크리트구조 84.92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18051.1분의 60.7129 ㎡.

